

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선교의원 대표발의)

검 토 보 고

I. 주요내용

- 항만시설의 안전한 이용 및 무역항 내 선박사고로 인한 해양환경 위해요소 제거를 위하여, 항만시설을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방치한 자에 대하여 관리청이 원상회복을 명하거나 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(안 제83조).

II. 검토의견

- 개정안의 체계 및 자구를 검토한 결과, 법문의 명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일부 경미한 자구 수정을 하였음.

(전문위원 최 기 도)